기획취재 …산업재해의 현장을 찾아서

보상되지 않는 땀의 제값

저임금과 수면부족이 사고 원인

삶의 터전 되어야할 산업현장이 生死의 갈림길로

이글은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여러 부산물로 양산된 것중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하면서도 크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는 산업재해의 제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지난 동계방학중 취재기자를 선정, 현장취재로 엮은 것이다. 또한 산재의 피해상황및 그 보상방안, 법률상의 뜻도 아울러 규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나름대로 찾아 보았다. <편집자의 말>

□쉬는날이 소원

「조국의 근대화」란 기치를 높이 내걸고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한지도 4반세기가 흘렀다. 60년대 섬유 목재 시멘트 산업에서 70년대 종합제철 기계 전자 조선 석유화학산업등의 중화학 공업에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겉으로는 양적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농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공업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업입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결과 각종 공업단지에서는 경제성장과 수출신장의 절대적 명문하에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공해를 양산시켰고 1차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을 위축시키는토양, 수질, 대기오염등을 가져왔으며 공장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반기계노예적인 반복되는 생활로 인해 노동에 대한 소외현상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1백인에게 물어봅시다」라는 퀴즈 프로를 보고 있었다. 사회자가 말하기를 『구로공단에 있는 여공 1백사람에게 물어보았읍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하니까 한 가족의 대표는 자신있다는듯이 『사랑하는 그이와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대답했고 또 한 가족의 대표는 『야유회 가는 날』이라고 대답했다. 물론 둘다 정답은 아니었다. 그 뒤에 보너스 타는날, 고향가는 날, 봉급날 등 별의 별 대답이 다 나왔으나 결국 1위로 나온 답은 쉬는날이 가장 많았다.

—김종태의 「생각해보자」중에서

지난 1월27일 경제기획원은 85년 현재 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4시간으로 세계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면 「일벌레」로 자칭하는 일본의 41.1시간(84년)보다 10시간이상 더 일하고 있으며 경쟁상대인 싱가포르의 48.9시간, 미국의 40.1시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피로누적으로 각종 산업재해 (이하 산재) 와 직업병의 증대, 노동능률저하를 초래함은 물론이다.

□산업재해의피해 상황과 원인분석

이상 상기한 경제개발계획의 뒷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특히, 공해문제등은 직간접으로 어느정도 인식되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심각하고 가장 손실이 큰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쉬쉬하는 형편이다. 이에 본 기자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보상안및 피해상황등을 다각도로살펴보기 위해 노동부및 산업재활원등을 찾아 보았다.

그에 앞서 산업재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법률상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흔히 쓰이는 산업재해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주에게 종속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돌발적 사고로 근로자가 입는 중독 부상, 사망을 말한다. 직업병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그 직업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돌발적 사고 없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법률상의 뜻으로서 산재란 업무상 재해를 말하는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와 직업병의경우도 그것이 업무상사유에의한 것이라야한다. 업무상사유에의한것에는 업무수행중은 물론 업무에필요한 준비행위의 사후정리행위, 작업대기중의 사고, 휴게시간중의 사고등과 직업자체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간접으로몸에장애를 일으켜 생기는 직업병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직업병은대부분 만성적으로 나타나기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렵고 완치가 어려운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직업병의경우 그실태조차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있는 실정이다.

85년12월말 현재 노동부가집계한 산재발생을 살펴보면 산재적용 사업장 (10인이상 사업장 단 특수업종 즉 광업, 고무, 화학, 석유, 플라스틱, 석탄등은 5인이상 적용) 총 6만6천 8백93개소 총 근로자 4백50만 5천1백85명중 재해자가 13만9천5백58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천7백18명이었다. 이를 경제적 손실액으로 따져보면 약 9천 3백억원으로 우리나라 GNP의 1.3%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이러한 사실은 1분여마다 한명씩 손이 잘리거나 다치고 하룻동안에 5명꼴로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있다는말이다.

그나마 노동부 통계자료는 산재보험가입자 3백94만여명만을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전국 경제활동인구 1천4백만명의 43%밖에 안된다. 더군다나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등의 통계는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집계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73년부터 8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자가 1만2천7백22명이며 신체장해자는 13만명이고 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1백10만5천명이라고 한다.

이는 6.25사변으로 입은 사상자가 행방불명까지 합해서 45만이었으니 우리는 지난 10여년동안 경제개발을 위해 커다란 전쟁을 두번씩이나 치룬셈이다. 또 경제적 손실은 2조4천6백72억으로 1년예산의 25%를 차지하는 거액이다. 또한 30세미만의 인구 사망원인중 산재가 제1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산재의 원인을 분석한 노동부 발표는 산재의 원인 대부분이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다고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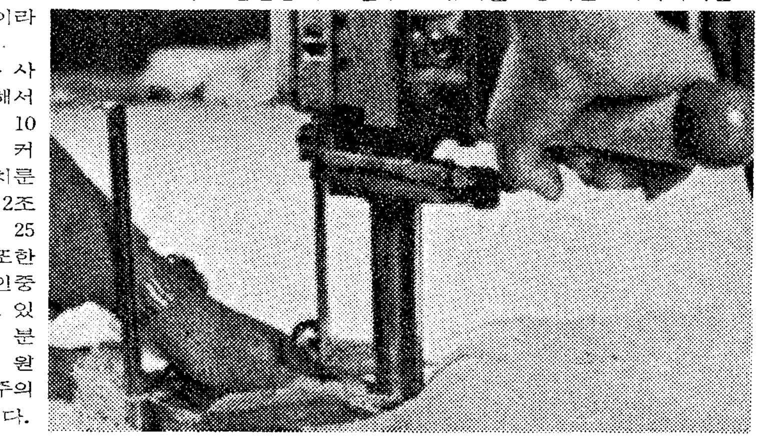

그러나 근로자 부주의의 경우도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과다한 작업과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만성피로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현재 근로기준법이규정하고있는 산재보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1차적으로 불의의 사고로 산재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회사측으로 부터는 평균임금의 60%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입원비를 공제받을수 있고 장해 등급에따라 보상을 받을수있다. 일례로 두눈이 실명된자는 제1등급에 속하는것으로 평균임금의 1천3백40일분을 지급받을수 있다. 만약 하루 평균임금이 7천5백원을 받는 사람이 산재를당해 두눈이 실명되었다면 1천만5천원을 지급받을수있다. 또한 개호비 (환자를 보호하는 사람에게 지급) 로 하루 6천6백원을 개호인이 필요없을때까지지급받는다.

산업 \ 구분	비 율	사망자(명)	구성비(%)
광 업	3.3	308	21.2
제 조 업	0.17	409	28.2
건 설 업	0.55	425	29.3
전기·수도 서비스업	0.52	20	1.4
운수보관업	0.54	237	16.3
기 타	0.20	53	3.1

산업별사망 재해현황

그렇다면 결국 이사람은 1천만5천원을 받고 평생을 두눈이 실명된 채로 살아야 하고 또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조치 해 버린다. 그러면 이 환자는 그후 부터 모든 약값등도 부담해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장해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환자에게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는데 이는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1시간 10분정도 타고 가다 부평역에서 내려 12—1번 버스를타고 종점까지 가면 근로복지 공사 산업재활원에 도착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재활원인데도 불구하고 총 병상이 3백개에 (최대 수용능력 4백20명) 불과하다. 2월24일 현재 입원환자가 총3백33명, 의사 8명과 물리치료사 23명, 간호원 33명이 병원을 전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산재병원이 이곳외에 총 일곱군데, 그중 탄광에서 많이 발생하는 진폐증을 검진하는 병원은 강원도 장성병원 하나 뿐. 전술한 년간 산재피해자 13만9천5백58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산업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건강에 해로운 여러가지 환경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업장의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X선, 혈액, 뇨검사 등과는 다른 특수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광산 근로자는 진폐가 문제시 되고 밧데리 공장이나 전자산업체, 구리공장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연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으며 조선업체등 용접작업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가지 안질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은 거의 형식적인 일반검진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만약 어느 부서의 작업환경이 어느 정도 유해한지 판정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검진에서 건강 위해 요인이 발견될 것을 두려워 하여 아예 특수 검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본 취재반이 산업재활원에서 만난 H중공업에서 산재를 당한 정성호 (가명 35세) 와의 일문 일답이다.

—산재를 당한 경위와 병명은.

▲84년 9월21일의 일이다. 38.5kg짜리 쇠덩이를 어깨높이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에 걸렸다. 원래 둘이서 하는 작업이라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하자 부장은 『왜이리 말이 많느냐』는핀잔만 주었다.

—보상은 정당히 받고 있는가

▲원래 평균임금의 60%와 개호비를 받게 되어 있으나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후생복리적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 진정, 고발도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산재를 당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산재를 당하면 1차적으로 근로자들이 먼저 숨기려 한다. 왜냐하면 치료기간이 한달이 넘으면 회사측에서는 보너스 감봉및 임금인상율을 적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산재환자는 치료기간을 장기간을 주지 않고 한달, 두달씩으로 계속 연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초진에서는 정확한 병명을 가르켜 주지않고 오히려 숨기려하고 설령 다리가 잘려 나갔다든지 하는 큰 사고도 초진에서 종결시켜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러면 그 환자는 보상금으로 장애자 등급만 받고 끝나 버린다. 결국 회사측으로부터의 보상금과 개호비및 평균임금 60%등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용원 노무자로 일하는 이두수(가명·40)씨는 85년3월 5일 볏가마니를 운반하다가 갑자기 볏짝이 넘어져 두다리를 다쳤다. 업무상 다친 사고이므로 당연히 산재환자로 처리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평균임금의 60%에 있어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달에 7만3천8백3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당 4천1백2원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계산해 보면 이씨의 하루 평균임금은 1만3천6백92원이고 평균임금의 60%는 24만6천4백65원이다. 그렇다면 자그마치 17만2천6백35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노동부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사업장에서의 작업만이 평균임금에 상정한다는 등의 말한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후생복리적임금이 통상임금에는 속하지만 나중에 산재를 당했을때 대비, 평균임금에는 속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후생복리적 임금이 아닌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충남 대천탄광에서 추간판탈출중으로 인해 왔다는 김수문 (가명 38세) 씨는 또 이렇게 말한다. 『산재를 당해 회사측에 법에 근거한 요구를 제시하면 뒷배경 조사를 해서 소위 「빽」이 있으면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숫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노동자를 가족처럼」이라는 구호를 대문짝 만하게 써 놓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자가 건강할때의 일이고 산재를 당하면 인정사정없이 관계를 끊어 버리는 비인간적인 회사측의 대우에 불만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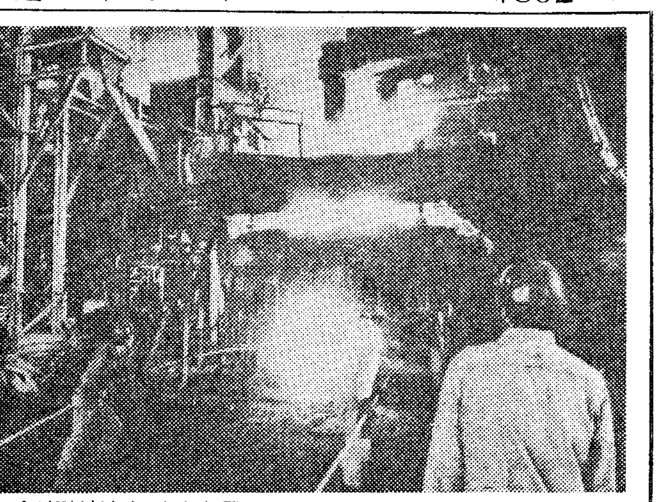

◇안전시설이 미비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을제기하면 강제로 중인에게 해고시켜 버리겠다는 등의 압력을 넣어 중인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설사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 소요된 경비가 막대한 액수이고 회사측도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처리해 준다』고 한다. 또 행여 근로감독관이 나오면—그 감독관도 피상적 조사에 그치지만—평소에는 1미터 앞을 분간하지못할 정도로 화약먼지 속에서 작업하는데도 미리 화약을 사용치 않는다』고 한다.

또한 『갱내의 산소 공급량도 법적으로 최저 21~19%인데이것은 숫제 최고가 19%에도 못미치는 실정이고 안전보호장구비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탄광에서 나온 이익금으로는 시설투자에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리사욕에만 채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또 『산재를 당해회사측이 지정해준 병원에 가니까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정병원이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중으로 밝혀졌다』는것이다.

『이에 진단서를 들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자 노동부 한관계자는 그 병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라는 것이다. 또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산재를당해 입원한노동자가 비록 완치는 안되었지만 불완전한몸으로 회사에 다시 복직하면 회사측에서는 10여만원을 해고비 명목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해고 시켜 버린다』고 한다. 사실 법적으로도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는 조항이 있다.

□보상은 충분히

이렇듯 산업의 최일선에서 누구 못지 않게 선진조국창조를 위해 일하고 있는 8백만 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이 되어야할 산업현장에서 하루 5백여명씩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또한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즉 회사가 의무적으로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보상금 지급시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어음으로도 지급해도 된다는 점,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산재를 당해 불완전몸으로 복직하면 법적으로 해고시킬수있다는 점, 소송제기시 회사측의 방해,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점등은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최형철 記者>

歲時鋒

소크라테스의 진리

사람은 날(生) 때부터 자신의 복을 갖고 나온다한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복을, 못 사는 사람은 그런대로의 복을.

서양에서도 점성술은 아니지만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날(生)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이거나 「권리」를 누리려고 노력하며 산다. 이 권리를 빼앗는 者가 있으면 타협을 하고, 타협점이 없는 경우에는 투쟁을 불사하면서….

이 투쟁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인류는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류는 일찌기 법을 만들었다. 법을 가지고 사람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불협화음을 없애준다.

우리는 세기의 철인 소크라테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의 철학적인 업적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그는 죽고 말았다. 그의 법정신이 너무도 존경스럽다.

혹자는 소크라테스를 바보라고 욕할지도 모른다. 그는 분명히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당시 소크라테스에게 도주를 권고한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였을테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우리 시대로 끌어들여 논해보자.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소크라테스 시대의 그 법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법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법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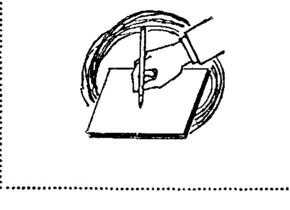

그렇다. 그 법은 정당한 법도 아니고, 좋은 법도 아닌소크라테스가 말한대로의 「악법」이다. 당장에라도뜯어고쳐야 할 「악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제도하에 있는 법은 어떠한가. 나쁜 법은 나쁜대로, 좋은 법은 좋은대로 있는 것이 타당한가 말이다.

법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법이 구속력을 갖는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다. 그래서 그 구속력을 속에드는 사람은 동시에 그 법을 감시해야할 권리도 갖는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타고 난 복이요, 천부인권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한다.

어떤 이는 법을 개정하자는 권리를 법에 저촉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당연히 법은 개정돼야 한다는논의가 바로 그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당위론—는일단 접어두자. 단지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명운동에 대해 이야기나 하자.

거리에서 서명을 하면 안된다. 실내에서 서명해도 안된다. 아예 어느 장소, 어느 때라도 서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또한 무슨 말인가.

현재 우리의 법에 그런 조항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흔히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코 법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은 법이어야 하며 그 이상의 것도 아니고 그 이하의 것도 아님을 알아야한다. 또한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니 만큼 국민된 자의 옳고 그르다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면서도 또 여러 사람들은 그가 바보라고 말하듯이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서명운동은 국민들의 당연한권리가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나쁘다고 했을때 더 좋은 법, 더 선량한법이 탄생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소크라테스에게 사약을 내린법은 악법이다. 그러나 악법을 악법이라고 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지옥법이 아닐런지.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법, 타는 태양을 그리워하며 떳떳이 서 있는 해바라기들의 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창사2주년기념 아이디어 공모

청보식품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청보! 소비자에 의한 청보!
참신한 경영의지와 의욕적인 자세로
창사 2주년을 맞이한 청보식품이 이제 더 큰 포부를 갖고 미래를 펼치기 위해 여러분의 고귀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분야 및 내용

분 야	내 용
생 산 (스낵, 라면)	① 유사 신제품 개발 및 기존생산 시설활용에 관한사항 ② 질적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에 대한 Know-How
판 매 (유통)	① 당사 판매유통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제품 ② 유통구조 개선및 유통활성화 방안

■응모요령: 각항 공히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로 작성
■접 수 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75-31(기남빌딩14층) (주) 청보식품 사업개발본부 Tel) 553-2311
■접수기간: 연중수시
■시 상: ①우수상 1명: 상금 1,000만원과 사원특채의 기회부여 ②가 작 3명: 각 300만원과 사원특채의 기회부여
■기 타: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음. 원고상단에 연락처 명기
●심사기간 및 발표: 연2회 (6月말, 12月말) 개별서면통보

청보식품

이·공학도의 필수품
SHARP 공학용 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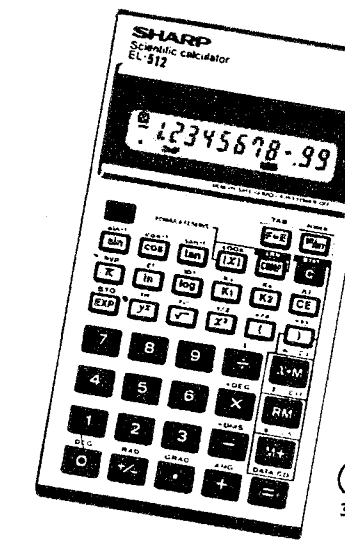

□10자리, 44함수
□128 Step, 4종
□(　　)계산 15개
□통계 계산
□도·분·초 변환 계산
□좌표 변환
□쌍곡선 함수
□입방근(3승근)계산
□정수 메모리 4개

(SHARP. EL-512)
희망소비자 가격 ₩20,900

●'85 TIME CAPSULE 수장품

※자매품

EL-5103	●48 Step 프로그램 입력 ●정수 메모리 5개
EL-5100	●80 Step 프로그램 입력 ●정수 메모리 10개

샤프 電子産業(株)
판매원: (株)三信事務機

이규형 캠퍼스소설
청춘스케치
입학기념 재산목록 제1호!!
오리엔테이션은 이 소설 한권으로 끝내준다!!
'스포츠서울' 인기연재중!
학점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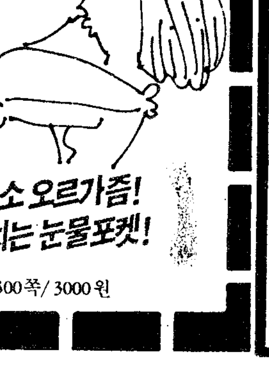

철수와미미의 좌우명이다. 등록금은 공룡만큼 받아먹으면서 학점은 개미똥만큼 주는 대학을 사랑한다. 맨날 C학점과 F학점을 오락가락해도 A학점 바퀴벌레들이 부럽지 않은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청춘의 영원한 흔적, 대학을 쌈빡하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사랑의 이야기—웃다가 웃다가 지치면 눈물도 난다. 화끈하게 죽여주는연발 폭소탄 깜빡마이신!!
쉴새없이 터지는 폭소 오르가즘! 쌈빡하게 가슴을 치는 눈물포켓!
오늘 719-2811 ●국판변형/300쪽/3000원

軍·행정병 모집
차트、도안
펜 글 씨
자격‖각군 17~26세 고졸이상(해군중졸이상)
특전‖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전형을 거쳐입대(복학조절가능)(교련혜택받음)
▲각과초보자환영 기초부터 개인지도식으로 지도함
▲수료후 취업희망자 각기관 취업알선
종로1가버스정류장 무과수 제과 2층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관인 인성 서예 챠트 학원
732-5346
735-3771

남 여 아르바이트生모집
※업무: 광고 판촉
※기본급 60,000원 및 수당지급
TEL: 975-0459
동 우 기 획

컴퓨터
개강: 매월 첫째 월요일 (통학권 발급. 휴일도 접수함)
17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7개월)
프로그래밍 전문과정 (1년)
프로그래밍 속성과정 (4개월)
키펀치 오퍼레이터 과정
마이컴 (BASIC, CP/M) 과정
위탁교육과정
※특설반: 새벽반, 기사대비반, PASCAL반
본 원 이대입구 전철역앞(중앙빌딩) 716-7291~3
종 로 단성사옆 비원쪽(중앙빌딩) 745-0461~2
영등포 영등포역옆 여의도쪽 100m(한전앞) 678-3785, 0750
영동 영동 사거리주택은행옆 546-4255~6
부 산 부산역앞(중앙빌딩)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정상은 원장
중앙전산학원